

회원학회 회칙 가이드라인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 이 학회는 “○○학회”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라 칭하며, 영문으로는 ○○○○로 표기한다.

제 2 조 (사무소) 학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 3 조 (목적) 학회는 ○○학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며, 회원 및 관련 학회 상호간의 학술 교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 조 (사업)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학술대회, 학술집담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
2.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
3.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협력활동
4. 회원 상호간의 친목 증진 및 경조에 관한 사업
5.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

제 2 장 회 원

제 5 조 (구성 및 자격) 학회는 각호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.

1. 정회원: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문의 또는 ○○학을 연구하는 의학연구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
2. 준회원: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○○학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
3. 명예회원: 학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저명한 외국인 전문가 중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
4. 특별회원: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정액의 입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

제 6 조 (권리와 의무)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학회에서 규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전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.

제 7 조 (포상) ① 학회는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학술활동, 학회발전, 사회봉사 등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회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② 포상의 종류와 내용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시행한다.

제 8 조 (징계) ①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로서 경고,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. 단, 제명처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.

②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제명된 회원은 회비미납 사유를 소명하고 미납회비를 포함한 일정금액을 완납한 다음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서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다.

제 3 장 임 원

제 9 조 (임원의 구성)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인
2. 부회장 3인 이내
3. 이사(회장, 부회장 포함) 20인 내외
4. 감사 2인

제 10 조 (임원의 임무)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를 처리한다.

④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
제 11 조 (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②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.

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12 조 (임원 선출)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다만,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.

② 차기회장은 보임 1년 전에 총회에서 선출하며, 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13 조 (임원의 보선) ① 회장과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단, 잔여 임기

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회장이 회장 직무를 수행한다.

②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.

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4 장 회 의

제 14 조 (회의의 종류) 회의는 총회,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.

제 15 조 (총회의 구성) 총회는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 16 조 (총회 소집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
②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.

③ 임시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④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
제 17 조 (총회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임원, 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
2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3. 예산,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4.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
5. 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
6.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

제 18 조 (총회 의결) 총회는 재적 정회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 단,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의장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결의를 부의할 수 있다. 다만,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9 조 (이사회 구성 및 소집) 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
③ 정기이사회는 연 6회로 하며,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.

제 20 조 (이사회 임무) ① 이사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.

1. 학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
2. 예산,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3. 회원의 자격심사,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4.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
5.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
6.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
7. 회칙 개정 및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8.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
9.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21 조 (이사회 의결) 이사회는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 단,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2 조 (위원회) ① 이사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.

1. ○○위원회
2. ○○위원회
3. ○○위원회
4. ○○위원회
5. ○○위원회

② 이사회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해당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된다. 다만,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 외의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 5 장 재산 및 회계

제 23 조 (재원) 학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1. 입회금
2. 연회비 및 부담금

3. 기부금

4. 기타 수입금

제 24 조 (재산의 관리) 학회의 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,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 25 조 (예산 및 결산) ①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②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정기총회 개최 이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
제 26 조 (회계연도)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○월 ○일부터 ○월 ○일까지로 한다.

제 27 조 (임원의 보수)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 6 장 사 무 국

제 28 조 (사무국) ① 이 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의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7 장 보 칙

제 29 조 (회칙 개정)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.

제 30 조 (규칙제정) 이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31 조 (준용규정)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또는 일반관례를 준용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회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
회원학회 회칙 가이드라인

제 1 장 총 칙

- 제 ○ 조 (연구회) ① 학회는 산하에 연구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연구회는 회칙에 준하여 설치하며 평의회(총회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학회는 연구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3 장 임 원

- 제 ○ 조 (임원의 해임) ① 선출된 임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1. 정당한 이유 없이 ○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
 2. 학회의 명예나 권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경우
 3. 기타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
- ②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에 제청에 의해 평의회(총회)에서 의결한다. 단 해임 대상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- 제 ○ 조 (명예회장) 명예회장은 이 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 추천과 평의회(총회)의 인준으로 추대할 수 있다.

- 제 ○ 조 (자문위원) ① 학회는 자문위원을 두며 그 임기는 ○년 단임으로 한다.
- ②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평의회(총회)에서 추대한다.
- ③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- ④ 회장은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 4 장 회 의

- 제 ○ 조 (평의원의 구성 및 임기) ①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평원으로 구성한다.
1. ○○○

2. ○○○

②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제 ○ 조 (평의원회 소집) ① 평의원회는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한다.

② 정기평의원회는 연 1회로 하며, 임시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
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

③ 회장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.

제 ○ 조 (평의원회 의결사항)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임원, 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
2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3. 예산,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5.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
6. 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
7.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

제 ○ 조 (평의원회 의결) 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분의
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 단, 회칙
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
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의장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결의를 부의할 수 있다. 다만, 서면결
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평의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.